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3. 23. 2010고합181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조두현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정남숙(국선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360만 원을 추징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